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함에 따라 법문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제11조제3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u>제4조의2(목재의 날)</u> ① <u>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u> <u>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u>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개정안과 같음)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u>목재문화진흥</u>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목재문화산업</u>

<u>회</u>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6조(<u>목재문화진흥회</u>) ① 목재문화의 진흥, <u>목재교육의</u>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u>목재문화진흥회</u>(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③ ~ ⑥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① ----- -----<u>목재산업의 진흥</u>, <u>목재교육의</u>----- ----- ----- -----<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 -----.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u>진흥회</u>-----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28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윤준병 · 김기표 · 박용갑
허성무 · 정동영 · 이성운
복기왕 · 박희승 · 송옥주
주철현 · 김태선 · 이춘석
임미애 · 이원택 · 허종식
김성환 · 이병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목재산업의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재 · 목조건축 등 관련 수요의 증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

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안 제16조).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함에 따라 법문 표현을 통일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함(제11조제3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재교육의”를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로,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u>목재문화진흥회</u>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u>목재문화진흥회</u>)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u>목재문화진흥회</u>(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① ----- -----<u>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u>----- ----- ----- -----<u>목재문화산업진흥회</u>----- -----.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5.</u> (생략) ③ ~ ⑥ (생략)	② ----- -----. 1. ~ 4. (현행과 같음) <u>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u>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